

#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현황과 특징

- 대한석유협회 -

## 1. 현 황

1980년대로 접어 들면서 세계석유시장에서의 유가는 점차 안정되어 국내의 유가결정 또한 점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부의 유가관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983년 2월 6일부터 항공유(Jet-A1, JP-4)와 용제에 대한 가격규제를 해제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국제원유가가 하락하고 국내유가도 최초로 소폭 인하됨에 따라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것이다. 1985년에는 석유화학공업의 주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일본 C & F가격에 매월 연동되다가 1988년 10월부터는 일본의 C&F가격×1.044(보험료, 관세, 방위세, 기타부대비)에 연동 되었으며 1989년 3월 27일부터는 고급휘발유, 군용휘발유와 함께 가격규제가 해제되었다. 1988년 11월에는 아스팔트도 가격규제가 해제되어, 1989년말 현재 가격규제가 해제된 제품은 Jet-A1, JP-4,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고급휘발유, 군용휘발유의 7개 제품이다. 1983년부터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 실시해 온 가격규제 해제, 나프타의 연동화 그리고 1988년 6월의 전국균일수송비 고시의 폐지등으로 현행 가격관리제도는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과 통제유가제도를 절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원유도입가(FOB), 운임, 원유도입금용비, 관세, 석유사업기금 등 각종 부대비용과 정제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된 평균복합단가를 기준으로, 각 제품의 가격은 제품별 가격탄력성과

국가의 정책(산업정책, 에너지소비정책,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격규제를 해제한 7개 제품 이외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정유사판매가격,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으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균일한 판매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고시가격은 각 제품에 대해 정유사 판매가격은 공장도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되며,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수료는 별도로 고시되어 중간유통가격과 최종소비자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정부부문 비용으로는 원유도입시 석유사업기금,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제품의 유통단계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비축사업,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해 오던 석유사업기금은 관세와 더불어 국제유가의 변동폭을 완화시키는 완충재의 역할이 커서 그 변동이 빈번하다.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로 원유도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원유와 제품수입시의 관세부과율을 종전 10%에서 할당관세제도를 적용, 1%로 낮추었고, 방위세는 2.5%, 무역협회비 0.24%,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고 있는데 1989년 3월 27일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특수세율은 유연휘발유가 100%에서 85%, 무연휘발유가 85%에서 70%로 인하되었다. 현재 LPG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각각 8%, 9%이다. 휘발유특수세율은

91년부터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 2. 특 징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에 의한 전국균일의 최고가격제도이다. 항공유, 용제, 나프타, 아스팔트, 고급휘발유, 군용휘발유를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에 대하여 유통단계별로 전국적으로 균일한 최고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둘째, 유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유사의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각 원가항목별로 5개 정유사의 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제조원가를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원가를 기초로 국내유가의 평균복합단가가 결정된다.

셋째, 정부에 의한 정유사의 이익관리이다. 즉 정유 5사의 이윤은 정유부문 자기자본에 대하여 세후 10%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환수하거나 보전에 주고 있다.

넷째, 정부는 유가관리를 통해 형평(equity)의 추구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등유와 경유는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되고 있으며, 휘발유는 소비억제를 위해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한편 석유제품 수송비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책정하므로써 거리의 원근에 따른 수송비 차이로 초래되는 소비자의 가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결과 원거리 지방의 소비자들도 근거리 대도시의 소비자들과 유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석유사업기금과 석유세제를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가격변동과 환율변동 등에 의한 국내유가의 변동폭을 석유사업기금과 관세를 이용하여 최소화시킴으로써 국내유가를 상당기간동안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소비정책적인 측면에서 휘발유에 대하여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특별소비세의 부과율을 제품별로 차등화하여 소비자가격구조를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정책적인 고려에서 나프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과 관세를 이용,

국내정유사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3. 문제점

### (1)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유가결정

규제대상 석유제품의 가격구조와 가격수준이 시장기능보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소비억제를 위해 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연료인 경유와 가정용 연료인 등유의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가격구조와 가격수준이 국제시장과 상이함으로써 제품의 수출입시 국내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석유제품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제품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즉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석유수요는 크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공급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불안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석유제품의 낮은 가격은 석유의 소비가 비효율적이며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중요한 에너지 정책 목표인 에너지절약(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석유제품의 지나친 저가 정책으로 인한 석유의 소비는 국내 에너지시장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절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처럼 국내 에너지시장이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에는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에 대하여 국내에너지시장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국내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규제대상 석유제품의 가격을 상당기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석유제품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한 유가의 계절적인 변동을 국내유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써 국내 석유시장에서 수급불안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로써 난방유의 경우 여름철에는 국내가가 국제가보다 높아서 수입의 유인이 있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국내가보다는 국제가가 높아서 수출의 유인이 있게 된다.

### (2) 정유사의 이윤통제

현행 유가관리제도하에서는, 정유 5사의 총이윤이 정유 5사의 정유부문 총자기자본에 대하여 세후 10%

로 통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윤통제는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동안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을 투자위험이 정유업과 유사한 산업들에 대하여 비교해 보면, 정유업은 7.3%에 불과한데 비하여 화학산업은 8.7%, 가전제품 제조업은 13%, 그리고 자동차산업은 13.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국내 공기업의 평균 자기자본 수익률이 8.2%이고 에너지 관련기업의 경우에는 8.8%로서 정유업의 7.3%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적정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적정 자기자본수익률은 적절한

사내유보를 위한 재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켜 나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적절한 배당, 그리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1988년말 기준으로 1988년도 법정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사내유보, 배당률 15%, 그리고 정제시설 증설 및 분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자기자본이익률의 적정수준은 현행의 세후 10%를 크게 상회하는 세후 17%가 된다.

이와 같은 엄격한 수익률 통제는 국내 석유산업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 스트레스 퇴치법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한국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연구소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적극적인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워크북」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 실린 스트레스 퇴치 요령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아침에는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날 것, 여유있는 하루는 여유있는 아침에서, 아침에 쫓기듯 출근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 입을 책을 항상 준비할 것. 기다릴 때의 초조감은 현대 스트레스의 대표격.
- 웃음은 내면의 조깅이다.
- 의문점은 바로 질문할 것.
-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은 상사와 의논할 것.
- 자기보다 우수한 부하가 있음을 기뻐할 것.
- 남에게 부탁하는 일에 부담 갖지 말 것.
-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분 좋게 할 것.
- 휴일은 맘이 흐를 정도의 운동을 할 것.
-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질 것. 때로 산보를 한다.
- 때로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상사(부하)라는 생각에서 해방되자. 역할이 자기 자신은 아니다.
- 용모에 신경 쓸 것. 멋을 내는데 자신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진다.
- 뭐든지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 것.
- 회사밖의 사람과도 사귄다.
- 문제나 걱정거리가 가득하다고 느끼면 실제로 종이에 써볼 것.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 것을 확인해 간다. 대체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문제는 소멸된다.
- 건강진단은 반드시 받는다.
- 삶은 일일수록 그날 중으로 처리할 것.
-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 책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 뜻에 위반되는 요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 등은 과감하게 상대에 알린다.